

#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어떻게 발동되나?

이번 양돈분야 FTA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세이프가드(SG) 발동물량이나 발동세율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이중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고, 역시 이 기간동안 돈육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 발동기준물량은 과거수입실적 및 발효시점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미 최대수입물량을 기준으로 15~20%를 증량한 수준이며, 매년 일정물량 또는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 냉장 삼겹살, 갈비 목살의 경우 10년차까지 SG를 발동할 수 있는데, 양국은 SG 발동 초기물량을 8,250톤에서 매년 복리 6%정도 늘린 물량으로 10년 동안 늘리면 마지막 년도에 13,938톤에 도달하게 된다.

발동세율이란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물량에 적용되는 세율로 실행세율의 일정비율(100~50%)까지 올려서 적용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발동물량 초과분에서는 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실제로 적용되는 세율로 현재 22.5%)의 100%인 22.5%가 적용되고, 6년차까지는 발동세율의 70%

인 15.8%가 적용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낮아져 마지막 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50%인 12.25%까지를 적용받게 되는데 향후 DDA 협상에 따라 감축가능성이 있어 비고정적이다.

한편 쇠고기의 경우 15년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15년차까지 SG가 발동되게 된다. 쇠고기의 초기 발동물량은 27만톤으로 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 100%인 40%의 관세가 적용되고, 6~10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인 30%, 11~15년차까지 실행세율의 60%인 24%를 적용받게 된다. **양돈**

구 분	냉장삼겹살 기타 (갈비, 목심)		
	세율(%)	SG발동	
		물량(톤)	세율(%)
6(기본)	22.50		
1년차	20.25	8,250	
2년차	18.00	8,745	
3년차	15.75	9,270	100
4년차	13.50	9,826	
5년차	11.25	10,415	
6년차	9.00	11,040	70
7년차	6.75	11,703	65
8년차	4.50	12,405	60
9년차	2.25	13,149	55
10년차	0.00	13,938	50